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86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이건태·김동아·김한규

박균택・박지원・박지혜

이기헌 • 이수진 • 임광현

조계원 · 주철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현행법 제 198조제1항 역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하여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피고인의 경우 2개월의 구속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매 심급마다 6개월씩 구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법상으로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별건으로 다 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무에 서는 이러한 방법이 구속기간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재판에 계속(係屬)된

사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그 사건에 기하여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수사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면 구속기간 만료 후 그다른 사건에 기하여 구속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92조제4항 및 제208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동일한 시기에 계속(係屬)되고 그 다른 사건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다른 사건을 이유로 새로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다른 사건에 대하여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다른 사건 을 이유로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재차 구속하여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속기간 갱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4항 및 제20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 ~	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동일한 시기에 계
	속(係屬)되고 그 다른 사건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함
	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구속기
	간이 만료된 후에 그 다른 사
	건을 이유로 새로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특별히 구속을 계
	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第208條(再拘束의 制限) ① ・ ②	第208條(再拘束의 制限)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다른 사건에 대하여 함께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
	에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다른 사건을 이유로 구속하
	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재차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